용인시 공고 제2025 - 1097호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추가모집 공고(안)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신청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용인시장(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 추가모집대상가구 : 관내 등록장애인 3가구(가구당 380만원 이내)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3. 24.(월) ~ 2025. 3. 28.(금)
○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장애인증명서, 소득확인서류(세대구성원 전체), 신분증
※ 해당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자 동의서

□ 선정 절차 및 발표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자격 적정성 심사 → 선정・통보 →
주택 개조 추진 → 정산 및 실적 보고

○ 선정기준

- 장애인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선정하고,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로 선정
- 경합 시 선정기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결과발표 : 4월중 개별통지

□ 기타사항

○ 선정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공동주택과 (031-6193-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대상자와의 관계**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개조 신청주택 주소	
세부사항	**주거유형** ※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자가소유 주택 □ ②주택소유주가 허가한 임대주택 □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개조 후 4년간 의무임대 필요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분야 : [ ] EX) 청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0명	
	실내 이동유형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 단독보행 □ 거동 불편 □ 좌식생활, 휠체어 이용 □ 보행보조기 사용 □ 지팡이 사용 □ 혼자거동 불가 □ · 기타( )	
	가구 소득수준 :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제출 (소득액: 원) ①중위소득 50% 이하 □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타 사업 지원여부 (지원불가) · 지자체 등에서 **유사 주택개조사업 지원 받은 후 3년 미경과** □ (주거급여 수급자중 수선유지급여 지원자, 햇살하우징, G-하우징 수혜자등)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지원 여부 □	
	개선요구사항 (중요사항 / 단순 노후 시설 교체불가)	

위와 같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 . .

신 청 인 : (인)

용인시장 귀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7. 소득확인 서류 1부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사업신청 유의사항	·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사업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후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3년간)하므로 단기간 내 이주계획이 있는 경우 이주 후 신청바랍니다.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 주택소유자 성명 : (생년월일 6자리 :)

○ 임 차 인 성 명 : (생년월일 6자리 :)

○ 연락처 : (주택소유자) (임차인)

○ 주택소재지 :

○ 주택개조사항 :

본인은 주택 임차인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금번 실시하는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주택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과 공사 후 최소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장애인 가구 의사에 따른 이주 제외) 임대 후 편의시설 설치 복구는 지원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 . .

건물소유주 : (인)

건물임차인 : (인)

용인시장 귀하

동의인 제출서류	1.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5년 ~ 2030년(5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대상자)이름/생년월일/주거유형/소득/장애유형/주소/연락처** **(대리인)이름/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계/연락처** **(임대인)이름/생년월일/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소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사업진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가옥주의 동의가 없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이름/주민등록번호/주거유형/소득/장애유형 · 등급/주소/연락처**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인시, 2025 ~ 2030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당 가입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대상 가구 선정 시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

용인시장 귀하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마리, 원) □ 돼지(마리, 원) □ 기타가축(마리, 원) □ 종묘(원) □ 기계·기구류(원) □ 기타(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 ·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